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50630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5. 12. 22.

판결 선고2016. 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428,287원과 그중 45,427,220원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5.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4,608,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C, E, F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2011. 8. 5. 피고 A과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410만 원, 보증기한 2013. 8. 5.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2) 하나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8. 5. 피고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변제기한 2013. 8.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3) 피고 A은 2012. 12.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5. 27. 하나은행에 45,452,5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3. 10. 2. 피고 A으로부터 25,3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45,427,220원이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이행한 다음날부터 연 12%이고, 확정손해금은 1,067원이다.

나. 대출금 편취

(1) 피고 D은 2011. 7.경 피고 F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I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자, 피고 B는 이를 승낙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그녀의 딸 피고 C 명의 주택을 제공하였다.

(3) 위 I실장은 2011. 7.경 피고 A을 만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주)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직원으로 기재한 '㈜ J 대표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H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피고 B를 만나 그녀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 명의 주택에 대해 피고 D과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C,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I실장은 2011. 8. 5.경 피고 A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 A은 그곳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위 I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의 합계

45,428,28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45,427,2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5.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A이 지급할 금액 중 대위변제금인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A이 지급할 금액 중 대위변제금인 45,427,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은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E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은 원고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E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그중 819,109원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6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5,427,220원에서 원고가 변제에 충당한 819,109원을 공제한 44,608,111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5.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이 2016.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부터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딸인 사실, 피고 C는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4,900만원이 입금된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사기대출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C에게 전세자금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F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F가 사기대출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F에게 전세자금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임태혁